

비상경제장관회의

23-18-1

(공개)

# 물류 경쟁력 강화 및 첨단산업 수출 지원을 위한 통관물류 규제혁신 방안

2023. 8. 9.

관 계 부 처 합 동

# 통관물류 규제혁신 방안(요약)

## 1 추진배경

- 물류환경 변화, 다양한 업계 건의를 반영하여 글로벌 물류 경쟁력 강화 및 첨단산업 수출 지원을 위한 「통관물류 규제혁신 방안」 마련
  - (물류환경) 복합물류·3자물류(3PL)·콜드체인(定溫物流), 물류공동화, 디지털 물류 전환 등 고부가가치·고효율 물류 등장
  - (업계) 반도체·방산 업계 등 보세제도 규제 완화, 수출 지원 요청\*
    - \* 물류업계(선사·창고·운송사·특송업체·해운협회 등), 제조업계(반도체·조선·방산·철강·석유화학·유관협회 등), 한국관세사회 등 현장방문 등을 통해 의견수렴('23.4.~)

### < 보세제도 개념 및 종류 >

- (개념·종류) 수입물품 과세가 보류된 상태(보세)로 보관, 운송, 제조·가공 등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 보세창고(보관), 보세운송(운송), 보세공장(제조·가공) 등으로 구분
- (의의) 보세공장은 외국 원재료를 보세상태에서 가공 후 과세 없이 수출이 가능해, 외국 원재료 활용 비중이 높은 첨단산업 분야의 핵심 수출 지원책\*
- \* 보세가공제도 활용 수출 비중('22) : 반도체 93%, 조선 92%, 바이오 91%, 디스플레이 88%



## 2 주요 추진과제

1. **물류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출입 통관·환적·보세제도 등 통관물류 숲 과정 규제 혁신
2. **국가첨단산업 수출 지원**을 위한 보세공장 진입장벽 해소, 기업 자율관리 확대
3. **디지털 통관물류시스템 고도화**를 위한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 개편, 공항만 디지털물류 구축 지원

# 1. 물류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 ① 보세창고의 고부가가치 물류 유치 지원

- (현황) 보세창고는 수입화물의 통관 전 일시 보관, 화물 통제 목적으로 운영되어 수출·중계무역 등 최신 물류 수요에 대응 곤란
- (개선) ①국가산업단지는 물동량 관계없이 보세창고 신규 특허 허용, ②보세창고에서 중계무역 물품 장기보관 및 부가가치 물류작업 허용

구 분	현 행	개 선
특허요건	해당 지역 물동량 감소시 특허불허 보세창고 공동운영 불가	국가산업단지(800개)는 특허 허용 공동 보세창고 허용(시설 등 공유)
보관기간	최대 1년 (6개월+6개월 연장)	중계무역 물품 장기 보관 허용
작업범위	일부 작업만 허용(Positive 규제)	다양한 물류작업 허용(Negative 규제)

## ② 권역별 전자상거래 통관인프라 확충

- (현황) 전자상거래 화물 운송형태가 ‘항공 → 해상’으로, 통관지역은 ‘수도권 → 전국’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통관시설은 수도권에 집중\*  
\* 인천·평택세관 해외직구 통관물량이 전체의 99%(‘22) → 통관지연 발생
- (개선) 통관인프라 확충으로 전자상거래 통관거점 육성  
- 인천항 해상특송장 신설(‘23.12), 군산항 해상특송통관장 신설(‘23.12) 등



## ③ 지역별 특화 물류산업 지원

- (부산) 환적물류 지원을 위해 부산항 내 국제무역선으로 부두 간 (부산 북항↔신항) 환적화물을 보세운송할 수 있도록 허용\*  
\* (해운협회) 화물차 운송 대비 부두 간 국제무역선 보세운송 시 운송비 17.6% 절감
- (광양·당진·포항) 철강 수출 물류 지원을 위해 철강제는 선박 적재 후 수출신고를 허용\*하여 상품가치 훼손, 선적지연 방지  
\* 선상 수출 신고: (현행) 광물·유기화학품·신차(전용선) → (개선) + 철강제품 추가

## 2. 국가첨단산업 수출 지원

### ① 보세공장의 수출경쟁력 제고

- (현황) 보세공장 제도를 활용하여 수출하는 첨단기업은 보세공장 관련 세관통제·신고절차 등으로 인해 물류 효율성 저해
- (개선) ①보세공장 외부공정 사전허가 생략·긴급반출 허용 등 절차 간소화, ②보관물품 제한 폐지, ③보관기한 제한 완화 등 자율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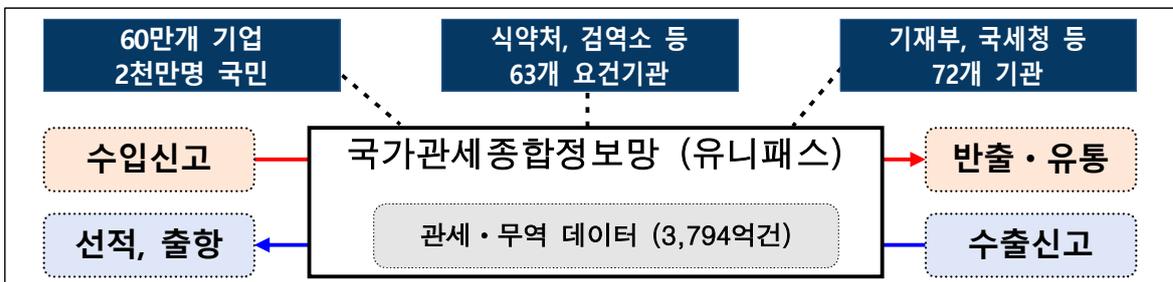
### ② 첨단산업의 보세공장 활용 확대

- (현황) ①경직적인 특허기준\*이 중소기업에 진입장벽으로 작용, ②시설 임차 시 임차기간(1~2년)까지만 특허 허용, 장기(5~10년) 특허 불가  
\* (예) 화물관리 전담부서 구성여부, 건물·장비 등의 자기소유 여부(임차시 감점) 등
- (개선) ①불합리한 특허기준 정비\* 및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완화된 특허기준 적용, ②시설을 임차할 경우에도 장기 특허 허용  
\* (예) (현행) 출하장 차양 너비가 벽체로부터 4m이상 → (개선) 화물 손상방지 시설 보유

## 3. 디지털 통관물류시스템 고도화

### ① 전자통관시스템(UNI-PASS) 전면 개편

-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개편 추진('23~'25 931억원) - 통관·징수·무역 통계 등 37개 시스템 전면교체, 오픈소스 클라우드 기반 환경 마련



### ② 공항만 디지털 물류 구축 지원

- 인천공항·부산항 스마트 물류 인프라 구축\* 등 관계기관 협업을 통해 시스템 연계, 정보공유를 통한 반출입신고 등 규제완화 추진  
\* (인천공항) 미래형 항공화물 인프라 구축(~'30) / (부산항) 스마트 공동물류센터 구축(~'26)

# 순 서

I. 추진배경 .....	1
II. 추진방향 .....	3
III. 추진과제 .....	4
1. 물류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	4
2. 국가첨단산업 수출 지원 .....	8
3. 디지털 통관물류시스템 고도화 .....	11
IV. 향후 추진계획 .....	13
※ [참고] 업계 건의 사항 .....	14

# I. 추진배경

◇ **물류환경 급변과 다양한 업계 건의를 반영하여 글로벌 물류 경쟁력 강화 및 첨단산업 수출 지원을 위한 통관물류 규제혁신 방안 마련**

□ **[물류환경]** 미·중 무역분쟁,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재편, e-커머스 급성장\* 등 최근 물류 환경 급변\*\*

\* 글로벌 e-커머스 시장 연평균 26% 성장률 전망, ('21) 7,700억 달러 → ('30<sup>e</sup>) 6조 달러

\*\* 대한상의, '23년 세계은행 물류성과지수(Logistics Performance Index) 분석('23.6.26.)

- (개요) '23년 한국 세계 17위로 10년간 하락 추세 반등('14) 21위→('16) 24위→('18년) 25위)
- (항목별) 통관·세관업무(7위), 물류인프라(9위) 상위권인 반면, 물류서비스(20위), 화물추적(23위), 적시성(25위), 운임산정 용이성(26위) 하위권
- (평가) 디지털 전환, 화물운송 통합데이터 플랫폼 구축, 중소 물류기업 지원 확대 등 규제 완화, 민간투자 확대 등을 통해 동북아 지역 물류경쟁력 확보 시급

① **(고부가가치 물류)** 보관·가공 등 복합물류, 제3자 물류(3PL) 확산, 코로나19 이후 의약품·바이오 콜드체인(定溫物流) 구축 가속화\*

\* 글로벌 콜드체인 물류시장(억불): ('19) 1,684 → ('22) 2,541 → (25<sup>e</sup>) 3,826

② **(공동·지역 물류)** 중소기업 물류공동화, 부산 신항-동북아 Mega Port, 인천·평택 - 중국 교역 중심항만 등 지역특화 물류 활성화

- 중소기업 공동물류 구축(인천항, 부산항 등) : 낮은 임대료, 공동시설 활용
- 지역특화: 인천전자상거래·바이오, 부산환적, 평택자동차, 광양·당진·포항철강, 울산·여수석유화학

③ **(디지털 물류)** 첨단화가 늦은 물류산업 발전을 위해 스마트 공항만 개발, 통합 물류플랫폼 데이터 연계 등 디지털 전환 추진

- 물류산업 IT 활용지수는 39.6, 전체산업 평균 68.4보다 낮음('18. KISTEP)
- 인천공항 스마트 화물터미널, 부산·인천 신항만 스마트 항만 추진 중

□ **[업계요청]** 물류환경 변화를 반영한 수출입 통관·환적·보세제도 등 통관물류 규제 개선으로 고부가가치 물류, 맞춤형 수출지원 요청\*

\* 물류업계(선사·창고·운송사·특송업체·해운협회 등), 제조업계(반도체·조선·방산·철강·석유화학·유관협회 등), 한국관세사회 등 현장방문 등을 통해 의견수렴('23.4.~)

## 참고 : 물류 · 보세제도 의의 및 보세제도 현황

□ [물류 및 보세] 물류는 보관·운송·가공 등 물품흐름 전반을 의미하며, 그 중 보세제도는 무역 프로세스에서 국내 통관물류 기능

① (물류) 물류(物流)는 재화가 공급자로부터 생산되어 수요자에게 전달될 때까지 이루어지는 물품의 흐름\*

\* 운송·보관·하역 등과 이에 부가되어 가치를 창출하는 가공·조립·분류·수리·포장·상표부착·판매·정보통신 등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1항1호)

물류 정의	보세제도 (관세법)	
① 운송 · 보관	① 보세창고 · 보세운송	
② 하역	② 무역선 입출항 · 하역	
③ 가공 · 조립	③ 보세공장, 종합보세구역	
④ 분류 · 수리 · 포장 · 상표부착	④ 보수작업 등	
⑤ 판매	⑤ 보세판매장	
⑥ 정보통신	⑥ 전자통관시스템(UNIPASS)	

② (보세제도) 보세(保稅)는 수입물품의 과세를 보류하는 상태\*로 보세창고(보관), 보세운송(운송), 보세공장(제조·가공) 등으로 구분

\* 수입 통관(세금 납부, 수입요건 확인)하지 않은 「관세법」 상 '외국물품'인 상태

- 특히 보세공장은 외국산 원재료를 보세상태에서 가공 후 과세 없이 수출이 가능해 첨단산업분야 수출 지원책으로 큰 역할\*

\* 보세가공 활용 수출 비중('22) : 반도체 93%, 조선 92%, 바이오 91%, 디스플레이 88%

### 〈 보세제도의 종류 〉

	의 의	현황
<b>보세창고</b> (관세법 §18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과세보류 상태(외국물품) 일시 보관</li> </ul>	<b>968개</b> (’23.6월) ※ 예: 영업용 542개 자가용 382개 등
<b>보세공장</b> (관세법 §18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과세보류상태(외국물품)을 원재료로 제조·가공</li> <li>과세보류상태(외국물품)로 수출 시 과세 無</li> </ul>	<b>162개</b> (’23.6월) ※ 예: 삼성반도체공장 (기흥, 구미, 평택 등)
<b>종합보세구역</b> (관세법 §19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외투 유치, 무역진흥 등을 위해 지정한 보세창고·보세공장 등 둘 이상 보세기능을 수행하는 보세구역</li> </ul>	<b>36개</b> (’23.6월) ※ 지역 9개(산업단지 등) 업체 27개(탱크터미널 등 22개)
<b>보세운송</b> (관세법 §2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항만에서 통관하지 않고 세관 통제 하에 과세 보류 상태(외국물품)로 국내 운송</li> </ul>	<b>보세운송 건수</b> (’22년) ※ 총 <b>160만건</b> 항공 82 / 해상 78만건

## II. 추진방향

- ① **물류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출입 통관·환적·보세제도 등 통관물류 쉐 과정 규제 혁신
- ② **국가첨단산업 수출 지원**을 위한  
보세공장 진입장벽 해소, 기업 자율관리 확대
- ③ **디지털 통관물류시스템 고도화**를 위한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 개편, 공항만 디지털물류 구축 지원

<b>목표</b>	<b>글로벌 물류 경쟁력 강화 + 첨단산업 수출 지원</b>
<b>전략</b>	<span style="background-color: #e1f5fe; padding: 2px;">규제 혁신</span> <span style="background-color: #fff9c4; padding: 2px;">민관 협업</span> <span style="background-color: #e1eef6; padding: 2px;">인프라 지원</span>
<b>3대 분야</b>  <b>7개 추진 과제</b>	<b>1. 물류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보세창고의 고부가가치 물류 유치 지원</li> <li>② 권역별 전자상거래 통관인프라 확충</li> <li>③ 지역별 특화 물류산업 지원</li> </ul>
	<b>2. 국가첨단산업 수출 지원</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보세공장의 수출경쟁력 제고</li> <li>② 첨단산업의 보세공장 활용 확대</li> </ul>
	<b>3. 디지털 통관물류시스템 고도화</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전면 개편</li> <li>② 공항만 디지털 물류 구축 지원</li> </ul>

### Ⅲ. 추진과제

#### 1. 물류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 ① 보세창고의 고부가가치 물류 유치 지원

※ 물류업계 건의

◇ 보세창고 ①진입제한 완화, ②보관규제 완화, ③작업범위 확대 등 규제혁신을 통해 수입화물 단순 보관 외 중계무역·환적 등 고부가가치 물류 유치 지원

□ [현황] 보세창고는 수입화물의 통관 전 일시 보관, 화물 통제 목적으로 운영되어 수출·중계무역 등 최신 물류수요 대응에 한계

① (진입제한) 신설 요건 중 과거 물동량 기준\*, 시설·장비 기준이 대규모 글로벌·신규 물류업체·중소업체에 진입 장벽으로 작용

\* 해당 구역의 최근 1년 반입물량이 최근 3년 평균 반입물량의 90% 이상 등 (전국 50개 관할구역 중 인천, 울산 등 13개 구역은 물량 미달로 신규 진입 불가)

② (보관규제) 보관기간을 최대 1년(6개월+6개월)으로 제한하고, 국내 물품 보관 시 별도 신고로 중계무역·수출 등 물류 지원 곤란

③ (작업제한) 포지티브(Positive) 규제로 물품 부패·손상 방지, 재포장, 라벨링, 상품 분류 등 제한된 물류 작업만 보세창고에서 허용

□ [개선] 보세창고 진입장벽 해소, 보관기간 제한 완화, 다양한 물류 작업 허용으로 고부가가치 물류 산업 창출 지원

① (진입제한 완화) 글로벌·신규 물류기업을 위한 물동량 적용 배제, 중소기업을 위한 공동 보세창고 제도 신설 및 시설요건 완화

①-1(물동량) 산업단지(농공단지 제외, 800개), 국가첨단산업단지 후보지\*(15개)에 대해서는 물동량 관계없이 보세창고 신규 특허 허용

\* 「국가첨단산업벨트 조성계획」(23.3.15)에 따라 후보지 경기·대전(반도체), 충청(이차전지), 경북·강원(바이오), 충청·광주·대구(미래차) 등 후보지 선정

①-2(공동보세창고) 시설·장비 등 개별요건을 갖추지 않고서도 보세창고 건설, 시설·장비를 공유하는 공동보세창고 제도 신설

①-3(시설요건) 출입문·차양막 너비·높이, 지상층 등 현재 물류 여건과 맞지 않고, 민간에서 자율 운영 가능한 불필요한 시설요건 삭제

구 분	현 행	개 선
물동량	해당 지역 물동량 감소시 특허불허	<b>국가산업단지(800개)는 특허 허용</b>
공동보세창고	보세창고 공동운영 불가	<b>공동 보세창고 허용(시설 등 공유)</b>
시설요건	출입문차양막 크기, 도크, 지상층 규제적용	<b>폐지</b>

■ **[사례]** A사는 다국적기업인 ○○○타이어로부터 국내 물류센터 운영을 위탁받았으나 보세창고 특허요건(물동량)을 충족하지 못해 수입 건별로 보세구역외 보관허가를 받아 물품을 보관하고 있었다. 하지만, 물동량 기준 완화로 울산 소재 산업단지 내에 보세창고 특허를 받고 이를 거점으로 하여 미국, EU, 태국 등으로 타이어를 공급하게 되었다.

**② (보관규제 완화) 중계무역 물품 등은 장기 보관을 허용하고, 우수 기업은 내국물품 보관시 사전 신고를 생략하고 자율관리 허용**

구 분	현 행	개 선
보관기한	최대 1년(6개월+6개월 범위 연장)	중계무역 물품 등은 <b>보관기한 미적용</b> (재고대비 재수출실적 30% 이상 충족시)
사전신고	내국물품 보관시 사전 신고 필요	<b>자율관리 보세구역은 사전신고 생략</b>

■ **[사례]** 와인 중계무역업체 B사는 그간 보세창고에 수입통관 전 상태로 물품을 보관할 수 있는 기간이 최대 1년으로 제한되어 세금납부 후 수입통관하여 보관한 뒤 재수출하였다. 하지만 중계무역 물품에 대한 보관기간이 폐지됨에 따라 수입통관절차 없이 세계 각지로 와인을 수출할 수 있게 되어 절차가 간소화되고 금융비용도 절감할 수 있게 되었다.

**③ (작업범위 확대) 네거티브(Negative) 규제방식으로 전환하여 자유 무역지역(FTZ)과 동일한 수준의 부가가치 창출 물류작업 허용**

- 세금 부과·수입 요건 확인의 기준인 품목분류번호(HSK 10단위)와 물품 성질이 변경되지 않는 범위 내 다양한 물류작업\* 허용
- \* [예] 보존 작업, 선별, 분류, 용기변경, 포장, 상표부착, 단순 조립, 검품, 수선 등

■ **[사례]** C사는 자동차 중계무역 업체로서 보세창고를 운영하고 있다. 보세창고에서는 자동차 분해·조립 작업이 허용되지 않아 완성차 세율이 높고 자동차 부품 세율이 낮은 제3국으로 부품단위로 분해 후 수출하는 중계무역거래를 할 수 없어 자유무역지역으로 보관시설을 옮기는 것을 검토 중이었다. 그러나 보세창고에서도 이러한 물류작업이 허용됨에 따라 자사가 보유한 보세창고에서 자동차를 분해 후 수출할 수 있게 되었다.

□ **[기대효과]** 글로벌·신규 물류산업 유치 기반 조성, 중소기업 공동 물류 지원 등 고효율·고부가가치 물류 수요 뒷받침

## 2 권역별 전자상거래 통관인프라 확충

◇ 수도권에 집중되었던 통관물량 분산을 위해 권역별 전자상거래 통관인프라 확충

□ [현황] 전자상거래 화물 운송형태가 ‘항공 → 해상’으로, 통관지역은 ‘수도권 → 전국’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통관시설은 수도권에 집중\*

\* 인천·평택세관 해외직구 통관물량이 전체의 99%(’22) → 통관지연 발생

○ 비수도권 거주자의 해외직구 증가\* 및 주요 항만의 해외직구 통관시설 설치 요구\*\*를 반영한 권역별 통관인프라 확충 시급

\* 비수도권 거주자 해외직구 건수: (’19) 1,670만건 → (’22) 4,010만건 / 연평균 34% ↑

\*\* 업계는 해상특송 통관건수 증가로 인한 물류지체 해결 요구(인천·평택·군산항)

□ [개선] 인프라 확충으로 권역별 전자상거래 통관거점 육성



① (경인권) 인천항 ‘해상특송물류센터\*’ 신설(’23.12, 전자상거래 클러스터 내)

\* ①(사업규모) 9,496평(599억원), ②(처리능력) 시간당 13,000건 이상 처리

③(기대효과) E-Commerce 클러스터 내 위치하여 수출입업체와 시너지 효과 전망

② (서해안권) 중국발 전자상거래 화물\* 신속 통관을 위해 군산항에 전자상거래 물품 전용 ‘해상특송통관장’ 신설(’23.12)

\* (’19) 1,142만건 → (’20) 3,070만건 → (’21) 4,735만건 → (’22) 5,542만건 / 연평균 69% ↑

③ (영남권) 부산을 일본 전자상거래 수출입 통관 거점\*으로 육성

\* 일본 전자상거래 해상특송화물은 수출부산세관, 수입용당세관에서 통관 중

□ [기대효과] 해외직구 신속통관, 물류비 절감 및 지역경제 활성화

■ [사례] 중국에서 군산항 등 지방무역항으로 반입되는 전자상거래물품은 통관시설 미비로 인천 등 수도권 시설로 보세운송 후 통관하였으므로, 물류비가 추가로 발생하고 통관시간도 1~2일 지체되었다. 그러나 권역별 특송물류센터가 설치되면서 운송비를 절감하고, 운송 리드타임도 감축할 수 있게 되었다.

### 3 지역별 특화 물류산업 지원

※ 한국해운협회 등 건의

◇ 지역별 특화 물류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통관물류 최적화 방안 마련  
(부산) 환적, (인천) 콜드체인, (광양·당진·포항) 철강 수출, (평택) 자동차 수출

- [현황] 각 항만별로 지역경제, 위치, 기능에 따라 물류 차별성 강화
  - 부산항·인천항은 북항·내항을 재개발하여 물류 기능을 신항으로 이관하고, 환적·신선화물 등 고부가가치 화물 유치 추진
  - 광양·당진·포항항은 주력 산업품목인 철강제품의 수출 전진 기지, 평택항은 전국 최대의 자동차 수출입 전진기지로 자리매김
- [개선] 지역별 입출항·특허·화물보관 등 통관물류 최적화 방안 마련
  - ① (부산) 환적물류 지원을 위해 부산항 내 국제무역선으로 부두 간 (부산 북항↔신항) 환적화물을 보세운송할 수 있도록 허용\*
    - \* (해운협회) 화물차 운송 대비 부두 간 국제무역선 보세운송 시 운송비 17.6% 절감
  - ② (인천) 고부가가치 화물 유치를 위해 국가산업단지는 보세창고 특허시 물동량 기준을 배제하여 콜드체인 보세창고 등 비즈니스 모델 지원
  - ③ (광양·당진·포항) 철강 수출물류 지원\*을 위해 철강재는 수출신고 전에 선박에 먼저 적재할 수 있도록 허용\*\*
    - \* 철강재 특성상 크기·중량 순으로 적재해야 하나, 수출신고 수리 후 물품을 적재하도록 한 규정으로 인해 부두 야적장에서 크기·중량 순으로 적재 곤란 → 상품가치 훼손, 선적지연 발생
    - \*\* 선상 수출 신고: (현행) 광물·유기화학품·신차(전용선) → (개선) + 철강제품 추가
  - ④ (평택) 최근 급증세인 자동차 수출 지원을 위해 CY(컨테이너 전용 야드)에서 자동차 보관 허용
- [기대효과]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 거점·민간 주도 물류 특화 지원

- [사례1] A사는 그간 부산 신항에서 북항으로 환적화물을 운송할 때 화물차(육상)로만 보세운송할 수 있었으나, 부산항 내 국제무역선으로도 환적화물 보세운송이 허용되면서 필요에 따라 환적화물을 선박으로 운송하여 물류비를 절감할 수 있었다.
- [사례2] 철강재 수출기업 B사는 수출물품을 수출신고 수리후 선박에 적재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 인해 야적장에서 철강재의 수출신고 수리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고 적재하여 상품가치 훼손, 야적장 부족, 선적지연 등의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철강재의 선상수출신고가 허용되어 선적절차를 효율화할 수 있게 됨으로써 수출경쟁력 제고 및 물류비용 절감에 큰 도움이 되었다.

## 2. 국가첨단산업 수출 지원

### 1 보세공장의 수출경쟁력 제고

※ 반도체·방산·조선업계 건의

◇ 첨단산업 수출 기여도가 높은 보세공장의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해 ①세관신고·허가 절차 생략 확대, ②반출입·보관물품 제한 폐지, ③보관기한 제한 완화

□ [현황] 반도체·조선·바이오·디스플레이 등 보세공장 활용 수출 비중은 90% 수준\*으로 보세공장 제도는 수출 지원의 핵심

\* 보세가공활용 수출비중('22): 반도체 93%, 조선 92%, 바이오 91%, 디스플레이 88%

① (세관 화물관리) 최근 FTA 확대 등 관세보류 혜택 하락에도 불구하고 관세탈루 방지를 위한 반출입·운송 등 화물관리 제한 여전\*

\* [예] 보세공장 밖에서 외주작업(장외작업)을 하려는 경우 작업 장소, 기간, 작업에 투입되는 원재료, 생산물품 등을 기재하여 세관의 허가를 받아야 가능

② (보관물품 제한) 보세공장 자체 창고에는 제조공정과 관계없는 물품은 반입·보관이 불가하여 물품보관용 보세창고 추가 임대 필요

③ (보관기한 제한) 보세공장 반입 물품은 30일 내 수입신고 의무, 최대 1년 보관 가능 - 기한 내 신고 불가시\* 외부 창고에 보관

\* [예] 수입통관 여부 불확실한 경우, 재고 확보 차원에서 장기보관 필요한 경우 등

□ [개선] 보세공장의 세관 절차를 대폭 생략하고 자율 관리 보장

① (자율관리 확대) 우수 기업\*에 대해 보세공장 외부 공정(아웃소싱)의 사전 허가절차 등을 자체 기록·관리로 갈음할 수 있도록 허용

\* (요건) 자율관리 보세공장 지정(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 ERP 열람 허용 등)

(현황) 자율관리 보세공장의 수출액은 보세공장 전체 수출액의 88%('22년),

반도체·디스플레이·바이오 등 주요 보세공장은 자율관리 보세공장으로 운영 중(32개)

※ (예시) 외주작업(장외작업) 허가·정정 등 생략

현행	①장외작업 장소등록	②허가신청 (장소, 기간, 원재료, 생산품 등 기재)	③세관심사	④허가	⑤정정 (변경사항 발생시)	⑥완료보고 (건별)	
개선	①장외작업 장소등록	생략				⑤정정 (변경사항 발생시)	⑥완료보고 (건별)
						②작업내용 제출 (분기별)	

■ [사례] 조선소 보세공장을 운영하는 A사는 산업 특성상 장외작업 건수가 많고(조선 3사 장외작업 허가·정정·완료보고 年 33만건) 품목이 다양해 장외작업 절차 단순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가 빈번했으나, 장외작업을 기업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 되어 행정제재 부담이 해소되고 투입인력 및 물류비 등이 크게 절감되었다.

- **(신속통관)** 첨단산업의 원재료·중간재·생산품 등 신속한 물류지원이 필요한 물품은 반출입·수출입 신고 즉시 자동 수리
  - **(긴급반출 허용)** 불량 분석용 물품을 야간·공휴일에 긴급 반출해야 하는 경우 수입신고 없이 반출한 후 수입신고(10일 이내) 허용\*
- \* (현행) 생산중단 제품이나 원재료는 수입신고전 즉시반출 대상 물품에서 제외 → (개선) 생산중단 제품이나 원재료도 불량분석 목적의 긴급반출 허용

■ [사례] 24시간, 365일 반도체 보세공장을 운영하는 B사는 세관 근무시간을 지나 불량 분석을 위해 보세공장에서 물품을 반출할 때 매번 임시개청 신청을 해야 했으나, 수입신고 없이 즉시 반출 허용으로 물류 절차, 시간이 단축되었다.

**② (보관물품 제한 폐지) 반출입 물품 제한을 폐지 - 보관·판매 등 공장 제조공정과 관계없는 물품도 보세공장에 보관·반출입 허용**

- 보세공장 자체 창고를 자가용 보세창고처럼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
- \* (예외) 타인 물품을 보관료를 받고 보관하는 영업용 창고 형태(창고업) 운영 제한

■ [사례] 반도체 보세공장을 운영하는 C사는 해외거래처에서 만든 물품이 보세공장에 반입 가능한 물품이 아니어서 별도 보세창고를 임대해서 보관해야 했으나, 반출입 물품 제한이 폐지되면서 보세창고 임대 없이 보세공장에 함께 보관할 수 있었다.

**③ (보관기한 완화) 보세공장 반입 물품의 보관기한 규제 완화(1년→특허기간) 및 수입신고 지연에 따른 행정제재 폐지**

구분	현행	개선
보관기간	최대 1년	특허기간까지 보관 가능
행정제재	30일내 수입신고하지 않으면 주의처분 부과	주의처분 폐지

■ [사례] D사는 방산관련 제조설비·부품 수입시 서류 준비 등으로 30일 이내에 수입신고할 수 없어, 이러한 물품들은 보세공장에 반입하지 못하고 별도의 보세창고를 특허받아 보관해야 했으나, 수입신고 지연에 따른 행정제재(주의) 처분이 폐지되면서 불필요한 물류비 지출도 막고 해당 부품을 공정에 적기 투입할 수 있었다.

□ [기대효과] 기업 물류 효율화, 외부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능력 제고 등으로 첨단산업의 수출경쟁력 제고

◇ **첨단산업 전후방 연관기업의 보세공장 제도 활용도 제고를 위해 보세공장 특허기준 및 특허기간 제한 완화**

□ **[현황]** 보세공장은 운영인·시설 기준·내부 관리 체계 등 50여개 엄격한 세부 요건\* 심사 후 제한적으로 특허 부여

\* 운영인의 결격사유 미해당 + 제조시설 및 보관장소 시설 충족 + 물품관리체계 확립 등

① **(일률적 특허기준)** 중소기업이 충족하기 어려운 시설요건\*, 관리요건\*\* 등이 보세공장 특허취득의 진입 장벽으로 작용

\* [예] 출입구 및 차양의 너비·높이, 건물의 바닥 높이 등을 일정 기준 이상 충족 필요

\*\* [예] 화물관리 전담부서 구성여부, 건물·장비 등의 자기소유 여부(임차시 감점) 등

② **(특허기간 제한)** 임차건물은 특허기간이 임차기간으로 제한되어 임차계약 기간(1~2년)에 맞춰 보세공장 특허 반복 갱신 필요\*

\* (민원인) 신청서, 관계서류 등 준비 / (세관) 현장실사, 특허심사위원회 개최 등 최대 30일 소요

□ **[개선]** 보세공장 진입장벽 해소, 중소 협력 업체의 보세공장 제도 활용 확대를 위한 보세공장 특허기준·기간 합리화

① **(특허기준 완화)** 경직적으로 규정된 시설기준은 폐지·완화\*하고,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완화된 특허 기준을 적용\*\*하여 특허 확대

\* [예] (현행) 출하장 차양 너비가 벽체로부터 4m이상 → (개선) 화물 손상방지 시설 보유

\*\* 중소기업이 갖추기 어려운 요건은 감점 폭을 줄이거나, 간소화된 요건으로 대체

② **(특허기간 보장)** 임차시설이 포함된 경우에도 장기 특허 허용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sup>(AEO)</sup> 10년, 기타 업체 5년)

□ **[기대효과]** 첨단산업 연관기업 간 원료·중간재를 수입신고 없이 과세보류 상태로 사용 등 보세제도 활용으로 시너지 효과 창출

■ **[사례1]** 화물관리 전담 부서 구성이 힘들어 보세공장 특허를 받을 수 없었던 중소기업 A사는 중소기업에 완화된 특허기준이 적용되게 됨에 따라 보세공장 특허를 취득할 수 있었으며, 보세공장인 납품업체에도 중간재를 과세보류 상태로 납품할 수 있게 되어 가격 경쟁력을 높일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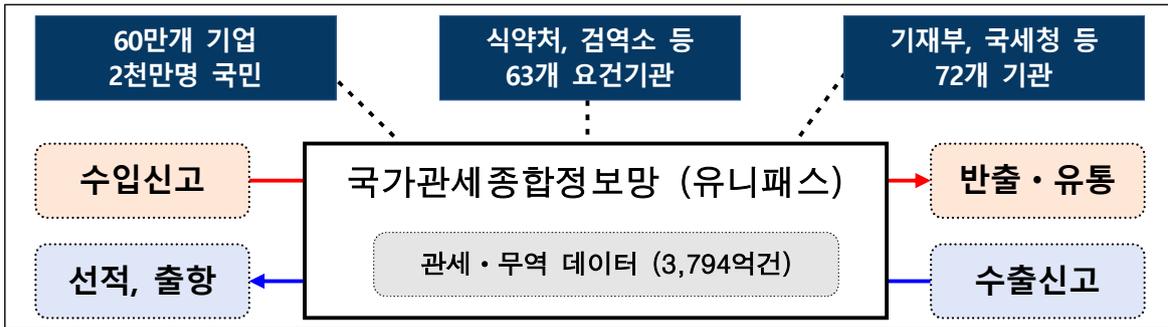
■ **[사례2]** 단일보세공장을 운영하는 B사는 특허받은 면적 중 임차한 시설이 일부 있어 2년 단위로 특허갱신 절차를 밟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으나, 특허기간 제도 개선에 따라 10년의 특허기간을 받게 되어 행정절차와 업무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되었다.

### 3. 디지털 통관물류시스템 고도화

#### 1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전면 개편

◇ 기업과 국민에게 안전하고 효율적인 통관물류 서비스 제공을 위해 37개 분야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시스템 전면 교체 및 오픈소스 클라우드 기반 환경 마련

□ [현황]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은 60만개 기업·2천만명 국민이 이용하는 전자통관시스템으로 24시간 365일 운영되는 무역물류 핵심 인프라



○ 전산장비('15년 도입)의 노후화·단종으로 원활한 통관물류 서비스 제공 및 폭증하는 전자상거래 무역\*에 선제적 대응 곤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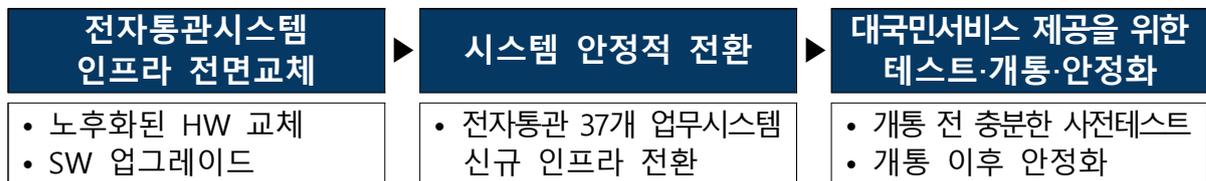
\* [수출] 건수(만건) ('18) 962 → ('22) 4,360 (45배↑) / 금액(억불) ('18) 3.8 → ('22) 17.4 (4.6배↑)  
 [수입] 건수(만건) ('18) 3,227 → ('22) 9,613 (30배↑) / 금액(억불) ('18) 27.7 → ('22) 47.4 (1.7배↑)

○ 공공정보시스템의 클라우드 전환·통합 등 디지털 플랫폼 정책에 따라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클라우드 기반 디지털 전환 요구

□ [개선]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전면 개편사업 추진('23.5.~'25.5)

\* 사업계약 착수보고회('23.6.28.) / [사업비] 931억원 / [사업자] 삼성SDS 컨소시엄

○ (시스템 교체) 통관물류·징수·무역통계·인터넷 포털·모바일서비스·유관기관 포털 등 37개 전자통관시스템 인프라 전면 교체



○ (디지털 전환) 신기술을 수용할 수 있는 유연한 업무시스템을 위해 오픈소스 클라우드 기반 환경을 마련하고, 클라우드 표준 수립

□ [기대효과] 안전하고 효율적인 대국민 통관물류서비스 제공

■ [사례] 관세청은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을 약 10년 만에 전면 개편하면서 글로벌 공급망 재편, 전자상거래 급증 등 급변하는 물류 환경에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다양한 모바일서비스 제공 등 업계 수요를 반영하여 디지털 통관물류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 2 공항만 디지털 물류 구축 지원

◇ 주요 공항만 스마트 물류 인프라 구축사업과 기업 물류 원활화 지원을 위해 실시간 물류 데이터 공유 기반 세관 화물관리 체계 구축 및 절차 간소화

- [현황] 인천공항, 부산 신항 등 新 디지털 물류시스템 구축 중
  - (인천공항)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자율주행차량, 로봇,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미래형 항공화물 인프라 구축 추진 중\*('22~'30)
    - \* 한진그룹(항공사) 등 업무협약 체결('22.9) → 테스트베드 구축(~'24)
  - (부산신항) 부산항만공사는 신항 배후단지에 인공지능 기반 재고 관리 기술 등을 활용한 스마트 공동물류센터 구축 사업 추진 중\*
    - \* (설계) '22.8.~'23.12. → (착공) '24.1분기 → (운영) '26년 이후

- [개선] 세관 신고데이터 위주 관리에서 신기술을 활용한 실시간 화물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인프라 설계 단계부터 협업 강화
  - (정보공유) 실시간 물류 데이터를 항공사·선사·터미널 등과 공유하여 출입차량·화물 위치 정보 등에 맞게 세관 검사 장소 및 장비 설치
  - (규제완화) 실제 화물 흐름에 따라 실시간 데이터가 입수될 경우 반출입 신고·적재화물목록 제출 등 간소화·생략 추진

< 정보공유를 통한 스마트 물류시스템 구축(안) >

현 행	개 선
반입-보관-반출-운송 등 건별 세관신고 필요	반입-보관-반출-운송 등에 따라 자동생성되는 데이터로 세관신고 생략



- [기대효과] 공항만 물류 전과정 자동화로 글로벌 물류 유치 지원

■ [사례] 관세청은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협업하여 항공사, 조업사, 운송사 등 다양한 물류주체와 출입 차량, 화물반출입 정보, 화물 위치정보 등을 실시간 입수·활용함에 따라 기업들이 반출입 신고, 적재화물 제출 등 각종 세관 신고를 생략할 수 있게 되었다. 이로 인해 물류비용, 시간이 단축되어 인천공항의 물류 경쟁력이 높아지게 되었다.

## IV. 향후 추진계획

추진 과제	부처	시행시기
<b>1. 물류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b>		
① 보세창고의 글로벌 물류기지화		
▶ 보세창고 특허기준 개선	관세청	'23.하
▶ 중계무역 물품 보관기간 확대	관세청	'23.하
▶ 자율관리보세구역의 내국물품 장치신고 자율관리 허용	관세청	'23.하
▶ 보수작업 허용범위 확대	관세청	'23.하
② 권역별 전자상거래 물류센터 거점 구축		
▶ 인천항 '해상특송물류센터' 신설	관세청, 인천시 등	'23.12
▶ 군산항 '해상특송 통관장' 신설	관세청, 군산시 등	'23.12
③ 지역별 특화 물류산업 지원		
▶ 부산항 내 환적화물 해상 보세운송 허용(관세법 개정)	관세청, 기재부, 해수부 등	'24년~
▶ 인천 바이오클러스터 등 고부가가치 보세창고 특허	관세청	수시
▶ 철강 제품 선상 수출신고 허용	관세청	'23.하
▶ 평택 CY에서 자동차 보관 허용	관세청	수시
<b>2. 국가첨단산업 수출 지원</b>		
① 보세공장 수출경쟁력 강화		
▶ 보세공장의 화물 자율관리 확대	관세청	'23.10
▶ 보세공장 반출입물품 제한 폐지	관세청	'23.10
▶ 보세공장 반입물품 보관기간 규제 완화	관세청	'23.10
② 첨단산업의 보세공장 활용 확대		
▶ 시설기준 완화, 중소기업 가이드라인 마련	관세청	'23.10
▶ 임대차 계약 연장 조건으로 장기 특허 허용	관세청	'23.10
<b>3. 디지털 통관물류시스템 고도화</b>		
①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 전면 개편		
▶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전면 개편	관세청	~'25.5
② 공항만 디지털 물류 구축 지원		
▶ 관계기관 간 물류 데이터 실시간 공유 추진	관세청, 국토부, 해수부 등	'23년~

**참고****통관물류 규제 관련 업계 건의사항**

◇ 물류업계, 해운협회, 반도체·조선·철강 등 업계 건의사항 총 **17건** 수용

**① (보세창고 특허요건) 보세창고 특허 시 물동량 기준 완화**

애로	▶ (타이어기업 A사) 영업용 보세창고 소재 지역의 수출입 물동량이 일정 수준 미만일 경우 신규 보세창고 특허 불허
개선	▶ 국가산업단지는 보세창고 특허시 물동량 기준 예외 인정(추진과제 1-1-1)

**② (보세창고 특허 시설기준) 보세창고 특허시 시설요건 완화**

애로	▶ (보세창고 B사) 출입문·차양막 너비·높이, 고정식 도크, 지상층 등 경직적인 시설기준 충족 시 추가 비용 발생
개선	▶ 출입문·차양막, 도크, 지상층 등 불필요한 시설요건 삭제 (추진과제 1-1-1)

**③ (보세화물 장치기한) 보세화물 장치기한 규제 완화**

애로	▶ (와인무역업체 C사) 보세구역 내 외국물품 장치기한은 6개월, 최대 1년으로 규정되어 물품의 장기 보관이 필요한 중계무역 불가
개선	▶ 중계무역 물품은 보관 기간 규제 완화 (추진과제 1-1-2)

**④ (전자상거래 통관) 권역별 전자상거래 통관 거점 구축**

애로	▶ (특송업체 D사) 해상특송 전자상거래 급증으로 물류지체 지속 발생
개선	▶ 수도권(인천), 서해권(평택, 군산), 남해권(부산) 등 전자상거래 통관거점 구축 (추진과제 1-2)

**⑤ (환적화물 운송) 부산항 내 국제무역선에 의한 환적화물 운송 허용**

애로	▶ (한국해운협회) 부산항 내(북항↔신항) 국제무역선으로는 환적화물 보세운송 불가
개선	▶ 해운선사도 별도 보세운송업자 등록·신고 없이 부산항 내 환적화물 보세운송이 가능하도록 근거 마련 (추진과제 1-3-1)

**⑥ (철강 수출) 철강제품 선상수출신고 허용**

애로	▶ (글로벌선사 E사) 선박에 적재하기 전 수출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철강은 부두 야적장에서 중량에 따라 적재하므로 선박 적재 전 신고 시 물류시간 지체
개선	▶ 광물, 신차 등에 한해 허용하고 있는 선상수출신고 대상에 철강제품도 포함 (추진과제 1-3-3)

**㉗ (보세공장 운영) 외주공정 수행시 장외작업허가 절차 간소화**

애로	▶ (조선보세공장 F사) 조선업 특성상 외주공정이 많은데, 장외작업 허가를 건별로 받아야 하므로 단순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세관절차 이행에 큰 부담
개선	▶ 자율관리보세공장은 반출입 등 필수 신고 외의 세관절차를 자체 기록 관리할 수 있도록 허용 (추진과제 2-1-1)

**㉘ (보세공장 운영) 보세공장 원재료·생산품 긴급반출 허용**

애로	▶ (반도체보세공장 G사) 세관 근무시간 이후 불량 분석을 위해 보세공장에서 물품을 반출할 필요가 있을 때 수입신고 후 반출해야 해 공정 지연
개선	▶ 세관 근무시간 외 긴급 반출이 필요한 경우 수입신고 전 반출할 수 있도록 허용 (추진과제 2-1-1)

**㉙ (보세공장 물품관리) 보세공장 반출입 물품 제한 폐지**

애로	▶ (반도체보세공장 H사) 해외거래처에서 만든 물품이 보세공장에 반입가능한 물품이 아니어서 별도 보세창고를 임대해서 보관하는 등 물류비용 발생
개선	▶ 보세공장 반출입 물품 제한 폐지 (추진과제 2-1-2)

**㉚ (보세공장 운영) 보세공장 반입물품 수입신고·보관기한 규제 완화**

애로	▶ (방산업체 I사) 수입통관 후 해당 보세공장에서 사용할 물품은 반입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수입신고 필요,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주의처분 부과
개선	▶ 보세공장 반입물품의 수입신고 지연에 따른 행정제재 폐지, 보관기한 규제 완화 (추진과제 2-1-3)

**㉛ (보세공장 특허요건) 중소기업 대상 보세공장 특허요건 완화**

애로	▶ (반도체보세공장 협력사 J사) 반도체공장에 중간재를 공급하는 중소기업은 보세공장 특허취득시 중간재 공급절차가 간편해지나, 보세공장 특허 요건 충족 곤란
개선	▶ 중소기업이 현실적으로 갖추기 어려운 시설요건, 내부 관리요건을 완화하는 등 중소기업 대상 보세공장 특허심사기준 마련 (추진과제 2-2-1)

**㉜ (보세공장 특허기간) 시설 임차 보세공장 특허기간 확대**

애로	▶ (반도체보세공장 K사, 관세사회) 타인의 시설을 임차하여 보세공장 운영 시 보세공장 특허기간이 시설 임차기간으로 한정되어 특허 갱신절차 부담 과중
개선	▶ 시설을 임차·운영하는 경우에도 최대 10년 특허기간 부여토록 추진 (추진과제 2-2-2)

**㉝ (특송화물 입출항) 해상특송화물 적재화물목록 병합관리 허용**

애로	▶ (특송업체 L사) 해상특송화물을 일정대로 선박에 싣지 못한 경우 매번 화물목록 정정 필요
개선	▶ 적재화물목록 병합 관리를 해상특송화물에도 허용

**14 (보세운송 신고) M.B/L 단위 보세운송 신고 허용**

애로	▶ (보세운송업체 M사) 일반수입화물과 달리 전자상거래화물은 하나의 M.B/L 아래 수백건의 H.B/L이 있어 H.B/L단위로 보세운송신고 곤란
개선	▶ M.B/L 단위 보세운송 신고 허용

**15 (보세공장 운영) 보세공장↔자유무역지역 간 반출입 절차 간소화**

애로	▶ (반도체 보세공장 N사) 자사 보유 보세공장 - 자유무역지역(창고 등) 간 반출입 절차가 복잡하여 제조 및 수출 활동에 애로가 큼
개선	▶ 동일법인이 운영하는 '자율관리 보세공장-자유무역지역내 창고' 간 반출입 신고 면제 추진('23.下, 「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

**16 (자유무역지역 물품관리) 사용소비 신고 완료 물품의 재반입 절차 간소화**

애로	▶ (반도체 보세공장 O사) 자유무역지역에서 사용소비신고를 완료한 외국물품이 다른 보세구역으로 반출 후 자유무역지역으로 재반입시 재차 사용소비신고
개선	▶ 최초 자유무역지역 반입시 사용소비 신고가 완료된 경우, 추가 사용소비 신고절차 생략 추진('23.下, 「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

**17 (보세공장 운영) 야간·공휴일 등 긴급 통관 필요 물품 신속통관**

애로	▶ (반도체 보세공장 P사) 임시 개청시간에 수입신고할 경우 잉여물품 통관(매각 등), 설비/부품, 연구용물품 등은 전자통관심사가 배제되어 통관지연
개선	▶ AEO 기업이 야간·공휴일 등에 수입신고하는 경우에도 전자통관심사 허용